

「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. 22(금) 평창군수(문화관광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1. 27(수)
- 상정일자 : 2016. 02. 01(월) 제21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관광과장 최승극)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」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나, 「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」에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위임사무 축소가 우려되므로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7조에서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지역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 검토 결과

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위해
평창문화원 사업보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
저촉사항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
검토 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문화예술재단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사업등이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필요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
10.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